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67
----------	-----

2024. 9. 11.(수)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8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8월 26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9월 4일

-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지현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 인용된 법령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며, 조례에 사용된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사용료”를 “대관료” 와 “이용료”로 구분해 명시함.  
(안 제4조)
- 교육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활동 보조를 위한 동반 보호자의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의2)
  - 이용감면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유족), 국군포로가족 등
- 이용료 및 감면 내용에 관한 [별표2]를 신설함.
  - 이용료 책정 기준: 시중요금의 50% 이하
  - 감면 내용: 평생교육프로그램 1인당 연2과목 감면

## 3.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이하 “도노인복지관”이라 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충청북도에서 위탁 운영 중인 도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행복실버대학)을 이용 중인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이용료 감면 요청이 있었고, 이에 도 담당부서 및 도노인복지관과 협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 및 문구의 정비 필요성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됨.
  - ※ 현재 도 내 청주시와 충주시에서 지역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음.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용(료)”를 “대관(료)”로 변경한 것임.
  - 이는 도노인복지관 내 시설(강당, 교육실 및 회의실)즉 공간의 대여에 대한 규정인 만큼,
  - 사전적 정의 상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씬’을 뜻하는 “사용” 보다는 ‘어떤 공간을 빌리거나 빌려줌’을 뜻하는 “대관”이 용어의 적합성 및 도민 이해의 편의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안 제5조는, 시설의 대관료 지불을 면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현재 도노인복지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대관할 경우 대관료를 면제하고 있음.
  - 또한 60세 이상의 수급자 어르신이 개인적 용도로 시설을 대관한 사례는 없고, 공공 시설을 개인적 용도로 대관한다는 것은 도노인복지관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바,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대관이 아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감면”을 “면제”로 바꾸고 제1호를 삭제하는 것은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p>제5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u>사용료를 감면</u>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60세 이상의 노인</u>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li> <li>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li> <li>3.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경우</li> <li>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li> </ol>	<p>제5조(대관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u>대관료를 면제</u>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삭 제&gt;</li> <li>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li> <li>3.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경우</li> <li>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li> </ol>

- 안 제5조의2는, 도노인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 제1항은 감면 대상을 현행 수급자와 차상위 어르신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유족), 국군포로가족 등까지 확대하였음.
  -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3항은 혼자서 거동 등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해 참여할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이 함께 교육장소에 출입해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법령 및 조례명과 조는 띄어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붙여 쓴 것을 바로잡은 것임.

현 행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b>√</b> 제21조의2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b>√</b> 제11조

- 안 제6조제4항 및 제13조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것임.
  - 안 제6조제4항의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1항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항은 불필요함.
  - 안 제13조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는 불필요함.
- 시설 대관료 감면에 대해서만 규정했던 현행 ‘[별표] 사용료 기준표’를,
  - 시설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별표 1] 대관료 기준표’와
  -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이용료 및 감면 내용’으로 이원화 하였음.

- 이는 도노인복지관의 대관료 및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정안			
<b>[별표]</b> <b>사용료 기준표 (제4조제3항 관련)</b>				<b>[별표 1]</b> <b>대관료 기준표 (제4조제3항 관련)</b>			
구 분	기 준	평일 사용료 (이용료)	비 고	구 분	기 준	평일 대관료	비 고
강 당	주간 1회 2시간	30,000원	· 토. 일. 공휴일 및 냉·난방 시는 <b>평일 요금</b> 의 20% 가산  · 야간(18시 이후)은 <b>주간사용료</b> 의 20% 가산	강 당	주간 1회 2시간	30,000원	· 토. 일. 공휴일 및 냉·난방 시는 <b>평일 대관료</b> 의 20% 가산  · 야간(18시 이후)은 <b>주간대관료</b> 의 20% 가산
교육실 회의실		20,000원	·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 가산	교육실 회의실		20,000원	·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 가산
				<b>[별표 2]</b> <b>이용료 및 감면 내용(제4조제3항, 제5조의2 관련)</b>			
구 분	기 준	이용 료	비고	구 분	기 준	이용 료	비고
평생 교육 프로 그램	1인/ 1과목	시중 요금 의 50% 이하	1. 시중요금은 당해 연도 1월 기준, 3개소 이상 업소 요금의 산술평균을 말함. 2. 감면내용 · 제5조의2제1호 대상: 100분의 100 · 제5조의2제2호~제9호 대상: 100분의 50 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감면은 연간 1인당 2과목에 한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조례의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개정 취지 및 내용상 타당함.

○ 또한 도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인 도노인복지관과의 협의를 진행했고, 민의 수렴을 위한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이용대상 및 사용료)”를“(이용대상 및 대관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을 “대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대관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관료와 이용료”로 한다.

제5조의 제목“(사용료의 감면)”을“(대관료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의상자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  
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청 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할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함께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애  
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  
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중 부상등급  
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  
탁 조례」 제11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중전의 별표)의 제목 중 “사용료 기준표 (제4  
조제3항 관련)”을 “대관료 기준표 (제4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중전의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평일 대관료	비 고
강 당	주간 1회 2시간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 일. 공휴일 및 냉·난방 시는 평일 대관료의 20% 가산</li> <li>· 야간(18시 이후)은 주간대관료의 20% 가산</li> <li>·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 가산</li> </ul>
교육실 회의실		20,000원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별표 2]

### 이용료 및 감면 내용(제4조제3항, 제5조의2 관련)

구 분	기 준	이용료	비 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1인/1과목	시중요금의 50% 이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중요금은 당해 연도 1월 기준, 3개소 이상 업소 요금의 산술평균을 말함.</li> <li>2. 감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조의2제1호 대상: 100분의 100</li> <li>· 제5조의2제2호~제9호 대상 : 100분의 50</li> </ul> </li> </ol> <p>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감면은 연간 1인당 2과목에 한함.</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이용대상 및 사용료) ① (생 략)</p> <p>② 강당, 교육실, 회의실은 제1항에 따른 대상 외의 자에게도 <u>사용</u>을 허가할 수 있다.</p> <p>③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u>사용</u>하려는 자로부터 <u>별표에 따른 사용료</u>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4조(이용대상 및 대관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대관</u>----- -----.</p> <p>③ ----- ----- <u>대관하</u> <u>거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u>하려는 자에게 <u>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관료와 이용료</u>---</p>
<p>제5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u>사용료를 감면</u>할 수 있다.</p> <p>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수급자 및 <u>차상위계층</u></p> <p>2. ~ 4. (생 략)</p>	<p>제5조(대관료의 감면) ----- ----- ----- <u>대관료를 면제</u>할 수 있다.</p> <p><u>&lt;삭 제&gt;</u></p> <p>2. ~ 4. (현행과 같음)</p>
<p><u>&lt;신 설&gt;</u></p>	<p>제5조의2(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별표 2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이용료를 감면</u>할 수 있다.</p> <p>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2조제 2호에 따른 수급자</p> <p>2.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2조제 10호에 따른 <u>차상위계층</u></p> <p>3.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제1항에</p>

다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의상자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청 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p>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함께 출입하게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li> <li>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li> <li>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li> <li>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li> <li>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li> </ol>
<p>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생략)</p>	<p>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p> <p>③ (현행과 같음)</p>

④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삭 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생략)

②·③ (생략)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  
-----  
-----.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2.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삭 제>

[별표]

사용료 기준표 (제4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	평일 사용료 (이용료)	비고
강당	주간 1회 2시간	30,000원	· 토. 일. 공휴일 및 냉·난방 시는 평일 금의 20% 가산  · 야간(18시 이후)은 주간사용료의 20% 가산
교육실 회의실		20,000원	·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 가산

[별표 1]

대관료 기준표 (제4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	평일 대관료	비고
강당	주간 1회 2시간	30,000원	· 토. 일. 공휴일 및 냉·난방 시는 평일 대관료의 20% 가산  · 야간(18시 이후)은 주간대관료의 20% 가산
교육실 회의실		20,000원	·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 가산

<신 설>

[별표 2]

구분	기 준	이용료	비고
평생교육프로그램	1인/1과목	시중요금의 50% 이하	1. 시중요금은 당해 연도 1월 기준, 3개소 이상 업소 요금의 산술 평균을 말함. 2. 감면내용 · 제5조의2제1호 대상: 100분의 100 · 제5조의2제2호~제9호 대상 : 100분의 50 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감면은 연간 1인당 2과목에 한함.

## 관계 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다.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를 말한다.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복지향상 도모

### 2. 비용 발생 요인

-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수입 감소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전 필요

###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의2(이용료의 감면)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2024년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등록 국가유공자 회원 중 평생교육 신청자 130명\* 산출  
\* '24.7월 기준 평생교육지원사업 등록인원 중 국가유공자 수
- 2024년 충청북도노인복지관 주이용대상인 거주지가 청주인 60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예상인원 207명\* 산출  
\* 2024년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 인원 1,700명, 청주시 주민수 대비 60세이상 등록장애인 비율 12.2% 적용
- 평생교육지원사업 이용료 : 과목당 평균 80,000원 / 연간 2과목 감면

#### 나. 추계 결과

- 연간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액(337명×80천원×50%×2과목) : 26,96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26,960	28,847	30,866	33,027	35,339	155,039
국가유공자 감면	10,400	11,128	11,907	12,741	13,633	59,809
장애인 감면	16,560	17,719	18,959	20,286	21,706	95,230

\* 연간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수 증가율(7%) 적용